

## ■ Legal Update ■

## 미국 및 EU 등의 제재 관련 러시아 대응법률 주요 내용 및 시사점(18. 5. 22. 기준)

지평 러시아 · 중앙아시아팀

### 1. 진행 경과

- 1) 2018년 4월 6일 미국 - 러시아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추가제재 명단 공표
- 2) 2018년 4월 13일 러시아 - 대미국 및 EU에 대한 대응입법안 마련
- 3) 2018년 5월 22일 러시아 하원(두마) - 미국 및 기타 외국의 비우호적 행위에 대한 행동(대응) 조치에 관한 연방법률안(일명 '비우호적 외국 국가 대응법') 통과

### 2. 개요

- 2018년 4월 13일 러시아 하원은 '미국 및 기타 외국의 비우호적 행위에 대한 행동(대응) 조치'에 관한 연방법률안(제441399-7호)(이하 '비우호적 외국 국가 대응법')을 발의하였습니다.
- 2018년 5월 15일 하원의 1차 심의 및 5월 17일 하원의 2차 심의를 통과한 뒤 2018년 5월 22일 본 비우호적 외국 국가 대응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법안은 상원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 서명 · 공포된 후 즉시 시행됩니다.
- 본 비우호적 외국 국가 대응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3. 비우호적 외국 국가 대응법 주요 내용

1) 목적 및 적용 대상

- 본 비우호적 외국 국가 대응법은 미국 및 기타 외국의 비우호적인 행위로부터 러시아, 러시아 국민, 러시아 법인 관련 러시아연방의 이익과 안보, 자주권, 영토통합, 러시아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본 비우호적 외국 국가 대응법은 러시아, 러시아 국민, 러시아 법인에 대해 비우호적인 행위를 하는 미국 및 기타 외국(이하 '비우호적 외국 국가')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비우호적 외국 국가 관할권 하에 있는 단체(기업), 비우호적 외국 국가의 직간접적인 통제하에 있거나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들의 임원, 비우호적 외국 국가의 국민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들 단체, 임원, 국민이 러시아연방에 대한 비우호적 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구체적인 대응 조치 적용 및 해제는 대통령령으로 결정됩니다.
- 러시아에서 유사품이 생산되지 아니하는 생존에 필수적인 제품에 대해서는 비우호적 외국 국가로부터 러시아 정부가 정한 제품 및/또는 원료의 반입 금지/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러시아 국민, 외국인, 무국적자가 개인 용도로 러시아로 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비우호적 외국 국가로부터 러시아 정부가 정한 제품 및/또는 원료의 반입 금지/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대응 조치

구분	내용
1	러시아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 분야에서 비우호적 외국 국가, 비우호적 외국 국가의 관할권 하에 있는 단체(기업), 비우호적 외국 국가의 직간접적인 통제하에 있거나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러시아연방 및 러시아 법인의 국제협력 금지/중단

구분	내용
2	제품 및/또는 원료의 생산국가가 비우호적 외국 국가 또는 제품 및/또는 원료의 생산자가 비우호적 외국 국가의 관할권 하에 있는 단체(기업), 비우호적 외국 국가의 직간접적인 통제하에 있거나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의 제품 및/또는 원료의 러시아 반입 금지/제한. 이러한 제품 및/또는 원료의 명단은 러시아 정부가 결정
3	비우호적 외국 국가의 관할권 하에 있는 단체(기업), 비우호적 외국 국가의 직간접적인 통제하에 있거나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러시아연방으로부터 제품 및/또는 원료 반출 금지/제한. 이러한 제품 및/또는 원료의 명단은 러시아 정부가 결정
4	비우호적 외국 국가의 관할권 하에 있는 단체(기업), 비우호적 외국 국가의 직간접적인 통제하에 있거나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위한 러시아연방 영토 내 용역, 서비스 제공 금지/제한. 이러한 용역 및 서비스의 종류는 러시아 정부가 결정
5	비우호적 외국 국가의 관할권 하에 있는 단체(기업), 비우호적 외국 국가의 직간접적인 통제하에 있거나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비우호적 외국 국가 국민의 러시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산 민영화 참여 금지/제한. 러시아연방을 대리하여 연방 재산 매각 업무 용역 및 서비스 제공 및/또는 연방재산 매각인 지위 수행 금지/제한
6	러시아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 기타 조치

#### 4. 결론 및 시사점

- 비우호적 외국 국가 대응법은 우선적으로 미국 및 미국의 제재에 참여하거나 이러한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외국 국가에게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동법은 비우호적 외국 국가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관할권 하에 있는 단체(기업), 비우호적 외국 국가의 직간접적인 통제하에 있거나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들의 임원, 비우호적 외국 국가의 국민도 경우에 따라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단체(기업), 임원, 국민이 러시아연방에 대한 비우호적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현재 비우호적 외국 국가 대응법은 구체적인 제재 분야를 법률로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러시아 대통령 및 정부에게 구체적인 제한/금지/중단을 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 러시아 대통령 및 연방정부는 동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지/제한 대상 종류를 결정 및 공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미국의 대러제재에 참여하거나 미국의 정책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국가는 아닙니다. 다만, 동법에서 ‘비우호적 외국 국가의 직간접적인 통제하에 있거나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법인/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바, 한국 기업이 미국 및/또는 비우호적 외국 국가의 ‘직간접적인 통제하에 있거나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보수적인 관점에서 한국 기업도 동법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경우에도 동법 적용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 내용에 대한 문의 또는 러시아 · 중앙아시아팀 사건 문의는 아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

러시아 모스크바 사무소	<p>이승민 선임외국변호사(러시아) · 모스크바 사무소장                  Tel. +7-495-795-3268    Email. smlee@jipyong.com</p>
본사 러시아 · 중앙아시아팀	<p>류혜정 파트너변호사 · 본사 팀장                  Tel. 02-6200-1722    Email. hjryu@jipyong.com</p>